

《研究基礎資料：翻譯》90-06

蘇聯의 所有法

1990. 12.

韓國法制研究院

蘇聯의 所有法*

(1990年 3月 6日 制定)

1. 解 說

1) 立法背景

蘇聯은 1990년 3월 6일 蘇聯에서의 所有構造를 정하는 이른바, '所有法'을 제정하였다. 리가초프수상은 1989년 10월 聯邦最高會議에 所有法案을 제출하면서 본 法律이 '금번 회기에 상정된 法案 전체의 체계를 잡아 주는 基軸이 되는 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 당시 제출된 法案 중에는 所有法案 이외에 土地法案, 社會主義企業法案, 聯邦統一租稅法案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所有法이 금후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려는 페레스트로이카의 路程, 나아가 蘇聯에서의 사회주의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評이다.

이 法의 성립 여부에 관한 표결결과는 연방최고회의 양원합계(의석정족수 542) 찬성350 반대3 유보11 있었으며, 이 法의 施行法案(1990년 7월 1일 施行)에 대하여는 찬성 346 반대2 유보8의 찬반율을 나타냈다. 이같은 표결결과는 비록 결석율이 높았다고는 하나, 所有法 자체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가운데 채택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더욱이 현재 蘇聯에서 급진개혁파(이른바 '지역간 그룹')가 정치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聯邦最高會議에서 이같은 표결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은 '體制選擇'의 근간을 이루게 될 所有法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특히 주목할 만한 상황전개라 할 것이다.

2) 主要內容

所有法 전체의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성립된 法律에서는 삭제되어 있는, 이 法 초안의 내용중 第1條 1項의 '蘇聯 사회·경제체제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 이 法의 정식명칭은 '蘇聯에서의 所有에 관한 소비에트社會主義聯邦共和國의 法律'이다.

社會所有와 蘇聯市民 個人所有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社會主義的 所有이다'라는 규정이다. 리가초프의 초안설명을 빌리자면, 현재 改革의 대상인 行政的·命令的 경제관리시스템과 그로부터 파생하는 '勞動者의 所有로부터의 疎外'는 이전의 '所有 全構造의 포괄적인 國家化'로부터 초래된 것이며, 이로부터 탈피함과 아울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經濟運營'에 관한 관심사를 높이는 길은 '經濟의 脫國家化' 즉 참다운 經濟制度의 형성에 있다는 것이 이 규정의 진정한 의미라 한다.

所有構造의 多樣化 또는 經濟構造의 多元化와 관련하여 우선 유의해야 할 점은 전통적인 蘇聯 法律學上의 개념(특히, 30년대 후반 이후)에 비추어 본다면, 生産手段의 '社會主義的 所有' 내지 '社會所有'는 그 社會化의 정도에 따라 '國家所有(즉, 全人民所有)'와 '協同組合·콜호즈所有(集團所有)'의 두가지 형태로 구별되며, 勞動者 즉 市民의 소유 또는 편익을 위한 '個人所有'는 社會主義的 所有로부터 파생하는 所有形態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자영농민과 수공업자 또는 일상적인 서비스영역에서의 소규모 생산수단에 대하여는 '私的經營'(1936년 憲法 第10條) 내지 '個人的 勤勞活動'(1977년 憲法 第17條)이라고 하여 所有 개념을 회피한 표현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재산소유형태는 民法上의 '個人所有'와 동급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所有의 3形態는 同列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중 '個人所有'는 그 목적물에 소규모의 생산수단과 소비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두가지 형태와 성격을 달리 한다.

所有法에서의 '市民의 所有'와 株式會社 등을 포함하는 '集團所有'라는 새로운 소유형태의 도입은 종래의 3가지 소유형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 같은 所有法上의 소유형태를 형식상 所有의 4形態라고도 표현할 수 있으나, 단순히 기존의 소유형태에 새로운 하나를 추가했다기 보다는 3가지 소유형태 각각의 성격과 구조를 크게 변경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所有主體의 종류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蘇聯에서의 所有形態¹⁾

(1) 市民의 所有權

1) *표는 제도적으로 새로이 창설된 것을 나타내며, ()내의 財產權形態는 직접적으로 所有權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① 협의의 市民所有權－第7條
- ② 勞動的 經營의 所有－第8條
- ③ 農民經營·個人的 副業經營－第9條

(2) 集團所有權

- ① 리스企業의 所有－第11條*
- ② 集團企業의 所有－第12條*
- ③ 協同組合의 所有－第13條
- ④ ‘기타의 會社·組合’의 所有－第14條*
- ⑤ 株式會社의 所有－第15條*
- ⑥ 經濟聯合體의 所有－第16條*
- ⑦ 社會團體·基金의 所有－第17條
- ⑧ 宗教團體의 所有－第18條*

(3) 國家所有權

- ① 聯邦所有－第21條
- ② 聯邦構成共和國 등의 所有－第22條*
- ③ 地方自治團體의 所有－第2條*
- (④ 國有企業의 包括的·經濟的 運用權－第24條*)
- ⑤ 國有企業勞動集團의 所有－第25條*
- (⑥ 國家施設의 運用管理權－第26條)

(4) 外國人 등의 所有權

- ① 合作企業의 所有－第27條*
- ② 外國市民의 所有－第28條
- ③ 外國法人의 所有－第29條*
- ④ 外國國家·國際組織의 所有－第30條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 (1) 우선 페레스트로이카의 路程에 맞추어 이미 단행법으로 제정된 ‘個人勞動法(1987)’의 社會·經濟的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市民의 所

有權' 중 '勤勞的 經營' 등의 所有形態가 종래의 '個人所有' 개념으로 완전히 회귀한 것은 아니라는 점.

(2) 國有經濟分野 전체의 재구성과 관련하여 리스企業, 集團企業, 株式會社, 기타의 會社 등 전혀 새로운 경영형태가 도입됨에 따라, 종래 콜호즈 및 消費協同組合을 주된 요소로 하여 형성되어온 '集團所有'라는 강학상 개념의 성격이 크게 변화한 점.

(3) 종래 '國有所有'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개념으로 간주되었고 사실상 소련의 縱的 部門別(이른바 省·廳 등에 의한) 行政的·命令的 관리시스템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데 반하여, 본 法에서는 새로이 聯邦 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 州, 地區 등의 自治體가 자립적인 所有主體로서 구성되고 이에 따라 國營部門의 所有構造가 대폭적으로 분화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 점(리가초프의 法案說明에 의하면, 國民經濟基金 전체의 약 70%가 聯邦構成共和國의 所有下에 놓여지게 된다고 한다). 또한 종래 國有企業 또는 施設의 財產權을 나타내는 용어로 1961년의 民事基本法에 따라 확정된 '運用管理權'이라는 개념이 企業에 관한 그 自主性を 보다 폭넓게 인정하여 所有權의 규정을 준용하는 '包括的 經濟的 運用權'으로 전환된 점(다만 施設에 관하여는 '運用管理權' 개념을 계속 유지한다).

* (4) 外國人の 所有權에 대하여는 종래 원칙적으로 蘇聯市民的 '個人所有權'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왔지만(러시아共和國 民法典 제562조 이하), 이 法에서는 合作 企業과 外國法人의 역할증대에 따라 이들에 대하여 法制上 다른 3가지 所有形態와 同列의 지위를 부여한 점.

3) 經濟改革의 方向과 所有法

이상의 윤곽을 가진 所有法이 經濟改革의 方向설정 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살펴봄에 있어, 우선적으로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현재 소련經濟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國營部門, 특히 그 基幹的인 部門을 어떻게 효율적인 運用형태로 개편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말한다면 國營部門의 주도적인 企業形態를 ① 國有形態(共和國所有 등 포함)를 유지하면서 自立性을 가일층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 구체적인 運用形態를 개선하는 문제, ② 株式會社로 개조하는 문제, ③ 리스企業으로 개조하는 문제 등이다.

株式會社로의 개조문제에 대하여는 리가초프수상도 法案說明에서 '有價證券市場의 형성에 수반되는 市場的 關係의 발전에 따라 國有企業이 國有株式會社로 재편되

는 과정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슬회한 바 있다. 여기에서 '國有株式會社'란 國家가 發行株式의 대부분을 인수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 용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所有法에서는 市民이 株主가 되는 것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第15條 第2項 후단), 현재 蘇聯내에 상당수의 高額所得者(地下經濟의 큰손 등 포함)가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근본적으로 '集團所有'형태의 실질적인 私有化가 진행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하여 株式會社論者들은 '資本論' 제3권에서 마르크스가 株式制度를 '資本主義體制 그 자체의 기초위에서 資本主義的인 私的產業의 폐지' 또는 '資本所有의 잠재적인 폐지'라고 특징지은 것을 근거로, 株式會社가 곧 資本主義라는 理論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리스形態를 선호하는 세력도 적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경제학자(아카데미 준회원)이며 당서기이기도 한 메드베제프는 리스企業을 '獨立採算制의 가장 발전한 모델'이라고 평하면서, 리스企業이 오늘날 蘇聯經濟에 있어 무엇보다도 시급한 집단적·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企業形態이며 사회주의경제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企業形態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통적인 社會主義論者들은 리스방식은 스스로가 본래의 所有者인 人民(그 구성부분의 하나인 企業勤勞集團)이 그 人民(직접적으로는 國家)으로부터 生産手段을 임차받는다고 하는 극히 기이한 制度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경우 '國有所有'는 행정기구인 國家의 所有로서 구체적인 양상을 띄지만, '全人民所有'는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의 私的 所有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극히 추상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리스企業의 所有'는 그 자체가 生産物과 所得의 所有를 의미하기 때문에(第11條) '生産手段의 國有'와 짝을 이루어 성립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所得으로 生産手段을 매입하는 발전방향을 감안한다면 리스企業이 '集團企業'(第12條)에로의 과도형태로서 위상을 갖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요컨대 이 경우에도 전통적인 社會的 所有形態의 관점에서 본다면 株式會社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實質的인 私有化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한편 國有形態를 유지하면서 自主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향하는 세력중에는 國有企業의 財產權을 게르만法에서의 下級所有權과 英國法에서의 保有(holding)에 접근하는 형태(이른바 全權的 經營的 保有)로 구성함으로써 '國家所有'를 토대로 하면서 실효적인 勞動者自主管理企業을 형성하려는 그룹도 있다. 所有法 第24條 第1項의 '스스로의 裁量에 의해... 法律에 反하지 아니하는 모든 行爲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는 國有企業의 自主성의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금후 제정하게

될 '社會主義企業法'의 내용여하에 따라서는 이러한 구상에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國家所有' 그 자체의 신용이 거의 치명적으로 훼손되어 있는 蘇聯을 비롯한 社會主義國家들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구상이 經濟改革의 기본방향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所有法은 所有形態의 多樣化라는 一般論에 따라 ①~③의 형태를 병렬적으로 늘어 놓으면서 거의 ①과 ②에 중심을 둔 구조를 취하고 있다. ①과 ②(특히 ①)는 본래 급진개혁파가 주장한 개혁방향이었던, 포괄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政治指導部가 스스로의 입장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고 議會의 다수파가 이에 동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政治指導部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진행하고 있는 현단계에 있어 우선 ③을 시도하고 그것이 목적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①과 ②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개혁의 수순을 취할 여유와 시간이 없을 정도로 政治的·經濟的 위기가 더욱 격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2. 條 文

第1章 總 則

第1條 (所有權) ① 蘇聯에서는 所有權을 法律로 認定하고 保護한다.

② 所有者는 自己의 裁量에 따라 所有物을 占有·使用·處分할 수 있다. 所有者는 所有物에 대하여 法律에 反하지 아니하는 모든 行爲를 할 수 있다. 所有者는 모든 經濟活動 기타 法律이 禁하지 아니하는 活動을 行하기 위하여 所有物을 利用할 수 있다.

③ 所有者는 法律이 定하는 경우 일정한 條件, 範圍內에서 他人에 의한 所有物의 한정적 使用을 認容할 義務를 부담한다.

④ 所有者는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의 法令이 정하는 條件 및 範圍內에서 所有權을 행사하는 경우 다른 市民과 그 勞動의 利用에 관한 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市民은 제공하는 勞動의 근거인 所有의 형태에 관계없이 現行法律이 정하는 賃金, 勞動條件 기타 社會的·經濟的 保障의 적용을 받는다.

⑤所有者는 所有權을 行使함에 있어 環境을 훼손하거나 市民, 企業, 機關, 國家의 權利 및 法律이 보호하는 利益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모든 形態의 所有의 利用은 生産手段으로부터의 勞動者의 疎外 및 人間에 의한 人間의 搾取를 排除하는 것이어야 한다.

第2條 (所有에 관한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의 法令) ①蘇聯領土 내에서 效力을 가지는 所有에 관한 基本적 法規는 蘇聯의 憲法에 따라 이 法에 의하여 定한다.

②이 法에 定함이 없는 所有關係는 이 法에 따라 定하는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의 法令으로 規定한다.

③歷史·文化記念物에 대한 所有權行使의 特例는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의 特別法令으로 定한다.

④發明, 發見, 學術·文學·藝術 기타 知的所有權의 目的物인 作品의 創造 및 利用에 관한 諸關係는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의 特別法令으로 規定한다.

第3條 (所有權의 目的物) ①所有할 수 있는 物件은 土地, 地下資源, 水域, 植物·動物, 建物, 建造物, 設備, 物質의·精神的 文化財, 貨幣, 有價證券 기타 財産이다.

②財産의 經濟的 利用에 의한 生産物 및 所得은 法律 또는 契約에 特別한 定함이 없는 한 그 財産의 所有者에게 귀속한다.

第4條 (所有權의 主體, 所有의 形態) ①蘇聯에서의 所有는 蘇聯市民의 所有, 集團所有, 國家所有의 形態를 취한다.

蘇聯에는 外國國家, 國際組織, 外國의 法人·市民의 所有物이 존재할 수 있다.

②所有形態는 市民, 法人, 國家가 소유하는 財産의 結合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소련의 法人과 外國의 法人·市民이 當事者인 合作企業을 포함하는 混合的 形態를 취할 수 있다.

③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는 法律에 의하여 이 法에서 定하고 있지 아니하는 所有形態를 창설할 수 있다.

④財産은 그 所有形態에 관계없이 共同所有(共有 또는 合有)權에 기초하여 동시에 複數의 人에 속할 수 있다.

⑤國家는 다양한 所有形態의 發展에 필요한 要件을 조성하고 이를 保護한다.

第5條 (所有者의 財産에 대한 請求) ①法人에 대한 債務履行請求는 이 法 第26條에서 定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所有權, 包括的 經濟的 運用權, 運用管理權

에 기초하여 法人에 속하는 財産에 미칠 수 있다.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의 法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所有者는 자신이 설립한 法人의 債務에 대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하며 당해 法人도 그 所有者의 債務에 대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② 市民은 所有하는 財産으로 자기의 債務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債權者의 請求에 의한 執行이 미칠 수 없는 市民財産의 目錄은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의 法令에 의하여 정한다.

第2章 蘇聯市民의 所有

第6條 (市民의 所有에 관한 一般規定) ① 市民의 所有는 社會的 生産에의 參加 및 個人的 經濟活動으로부터 획득한 勤勞所得, 信用機關·株式 기타 有價證券에 투자한 資金, 相續 기타 法律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의한 財産의 取得으로 형성되며 증가한다.

② 市民은 生産的·創造的 勞動에 자기의 意思에 따라 能力을 발휘할 排他的 權利를 가진다.

市民은 이 權利를 1人이 獨立的으로 또는 勤勞契約에 기초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市民은 그 所有者의 同意를 얻어 勤勞契約에 기초하여 자신이 종사하는 企業, 기타 經濟組織體, 農民에 의한 經營體 및 勞動에 기초를 둔 經營體의 資産에 金錢 등을 出資하고 自己의 出資額에 따라 이들 企業 또는 經營體의 利益分配에 참가할 權利를 가진다.

④ 市民은 農民에 의한 經營, 個人的 副業 및 園藝, 住宅의 建設 및 維持, 기타 法律이 정하는 경우에 所要되는 土地를 終身的으로 占有하고 이를 相續할 수 있다.

⑤ 市民의 財産相續權은 認定하고 保護한다.

第7條 (市民의 所有權의 目的物) ① 市民이 所有할 수 있는 物件은 住宅, 別莊, 園藝用家屋, 土地上的 植栽物, 運送手段, 貨幣資産, 株式 기타 有價證券, 家庭用品 및 個人的 消費用品, 農民에 의한 經營 기타 勞動에 기초를 둔 經營·個人的 副業·園藝·野菜栽培·個人的 기타 經營活動을 행하기 위한 生産手段, 生産物 및 所得, 기타의 消費用 및 生産用 財産이다.

② 住宅協同組合, 住宅建設協同組合, 別莊協同組合, 車庫協同組合, 기타 協同組合의

組合員이며 그 使用에 제공된 住居區劃, 別莊, 車庫, 기타의 建物 또는 建物の 一區劃에 대하여 自己가 분담하는 出資金を 완납한 者は 그 財産의 所有權을 取得한다.

國有 및 公共住宅基金에 의하여 세워진 建物內의 住居區劃의 貸借人 및 그 家族은 所有者로부터 당해 住居區劃을 買收할 權利를 가진다.

市民은 위의 所有權을 취득한 후 그 財産을 自己의 裁量에 따라 처분할 權利, 즉 그 財産을 讓渡, 遺贈, 賃貸, 기타 法律에 反하지 아니하는 行爲를 할 權利를 가진다.

③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은 法令에 의하여 市民이 所有할 수 없는 財産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하고는 市民의 勤勞所得, 貯蓄, 기타 法律이 허용하는 手段에 의하여 취득한 財産의 構成 및 價額은 제한되지 아니한다.

第8條 (勞動的 經營體의 所有) ① 공동으로 勞動에 기초를 둔 經營體에 종사하는 家族構成員 기타의 者가 所有할 수 있는 物件은 日常서비스·商業·大衆飲食營業·기타 經濟活動部門의 作業場 기타 小規模企業, 住宅 및 作業關聯施設, 機械, 設備, 運送施設, 原料, 資材, 기타 經營에 필요한 財産이다.

② 生産物 및 所得을 포함한 勞動에 기초를 둔 經營體의 財産은 공동으로 종사하는 家族構成員 기타의 者들간에 체결한 契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公有物이다.

第9條 (農民經營體 및 個人的 副業經營體) ① 農民에 의한 經營體는 住宅, 營農施設, 土地上的 植栽物, 食用家畜 및 役畜, 家禽, 農業機械 및 農具, 運送手段, 기타 自立的인 農業生産 및 生産物の 加工·販賣에 필요한 財産을 소유할 수 있다. 生産物 및 所得은 農民에 의한 經營體의 所有物이며, 農民에 의한 經營體는 그 裁量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農民에 의한 經營體의 財産은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에 의한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合有權에 기초하여 그 經營體의 諸構成員에게 속한다.

③ 本條의 規定은 市民의 個人的 副業經營體에 대하여도 準用한다.

第3章 集團所有

第10條 (集團所有에 관한 一般規定) ① 集團所有라 함은 리스企業, 集團企業, 協同

組合, 株式會社, 기타의 會社 및 組合, 經濟聯合體, 公共組織體, 기타 法人인 聯合體의 所有를 말한다.

② 集團所有의 形成 및 增額은 國有企業의 리스, 勞動者集團이 所得을 國有財產의 取得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제공, 國有企業의 株式會社로의 개조, 協同組合·株式會社 기타 會社의 設立을 위한 市民 및 法人 財產의 자발적인 結合에 의한 다.

第11條 (리스企業의 所有) 리스企業의 所有에 속하는 物件은 生産物, 所得, 기타 당해 企業의 資金으로 취득한 財產이다.

리스企業의 勞動集團構成員에 의한 企業業務의 管理 및 利益分配의 參加節次·條件은 聯邦 및 聯邦構成共和國의 리스에 관한 法令으로 정한다.

第12條 (集團企業의 所有) ① 集團企業의 所有는 個別國有企業 全財產의 勞動集團 所有로의 移轉, 리스에 제공된 財產의 取得, 기타 法律이 정하는 方法에 의한 取得에 의하여 성립한다.

生産物 및 所得을 포함한 集團所有의 財產은 그 集團의 共同財產이다.

② 集團企業의 個別勞動者의 持分은 당해 企業의 財產範圍內에서 정하여 진다. 그 持分은 集團企業의 성립으로 형성된 國有企業 또는 리스企業의 財產에 대한 勞動者의 持分 및 集團企業 설립후 당해 企業의 財產增加분에 대한 勞動者의 持分을 포함한다.

財產增加분에 대한 勞動者의 持分價額은 企業活動에의 勞動參加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企業集團勞動者의 持분에 대하여는 企業의 經濟活動의 實績에 따라 勞動集團이 정한 利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企業과 勞動關係를 종료한 勞動者 및 사망한 勞動者의 相續人에게는 持分價額을 지급한다.

集團企業이 清算하는 경우 勞動者 또는 그 相續人은 國庫, 銀行, 기타 당해 企業의 債權者에 대한 辨濟후 殘餘財產으로부터 持分價額을 지급받는다.

第13條 (協同組合의 所有) ① 協同組合의 所有는 組合員에 의한 金錢 기타 財產出資, 協同組合이 생산한 製品, 生産物의 販賣 기타 定款에서 정하는 事業活動에 의한 所得으로 성립한다.

② 協同組合이 清算하는 경우 國庫, 銀行, 기타 債權者에 대한 辨濟 후 殘餘財產은

組合員 간에 分配한다.

第14條 (기타 會社 및 組合의 所有) ① 法人인 기타 會社 및 組合의 所有는 參加者의 出資, 經營活動으로 가득한 財産, 기타 法律이 허용하는 근거에 의하여 당해 會社가 취득한 財産에 의하여 성립한다.

② 기타 會社 및 組合參加者의 持分은 固定資産, 運用資金, 金錢 및 有價證券, 財産使用權을 포함한다.

③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의 法令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企業, 機關, 組織, 國家機關, 市民은 기타 會社 및 組合의 參加者가 될 수 있다.

第15條 (株式會社의 所有) ① 株式會社는 株式의 賣却을 통하여 형성한 財産, 經營活動으로 加得한 財産, 기타 法律이 허용하는 근거에 의하여 당해 會社가 취득한 財産을 所有한다.

② 企業, 機關, 組織, 國家機關은 株式을 保有할 수 있다.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의 法令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株式會社의 勞動者, 기타 市民도 株主가 될 수 있다.

③ 國有企業은 당해 企業의 勞動集團과 權限있는 國家機關의 共同決定에 기초하여 企業財産의 全價額에 상당하는 株式을 賣却함으로써 株式會社로 改組할 수 있다. 株式의 賣却을 통하여 형성한 資金은 固有企業의 債務를 辨濟한 후 해당 項目에 計上한다.

第16條 (經濟聯合體의 所有) ① 企業 및 組織(콘체른, 産業部門內 企業合同, 産業部門間 企業合同, 地域的 企業合同 포함)의 經濟聯合體는 參加企業 및 組織이 임의로 당해 聯合體에 양도한 財産 및 그 經營活動에 의하여 加得한 財産의 所有權을 취득한다.

② 經濟聯合體는 參加企業 및 組織의 財産에 대하여 所有權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經濟聯合體의 活動停止 後의 殘餘財産은 당해 聯合體의 參加企業 및 組織간에 分배한다.

第17條 (會社團體 및 財團의 所有) ① 慈善團體 기타 財團을 포함한 會社團體는 建物, 構造物, 住宅, 設備, 文化·啓蒙·健康增進用 財産, 金錢, 株式 기타 有價證券, 기타 定款이 정하는 事業活動에 필요한 財産을 所有할 수 있다. 定款에서 정하는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會社團體 및 財團의 資金으로 設立한 企業도 당해 會社團體 및 財團에 소속될 수 있다.

② 會社團體의 清算 후 殘餘財産은 당해 會社團體 및 財團의 定款에서 정하는 目的事業에 사용할 수 있다.

第18條 (宗教團體의 所有) 宗教團體는 建物, 禮拜用具, 生産用·社會 및 慈善用 施設, 金錢 기타 宗教團體의 目的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財産을 所有할 수 있다.

宗教團體는 自己資金으로 取得 또는 創出した 財産, 市民 및 團體가 寄贈하거나 國家가 讓渡한 財産, 기타 法律이 정하는 근거에 의하여 취득한 財産의 所有權을 가진다.

第4章 國家所有

第19條 (國家所有에 관한 總則) ① 國家所有라 함은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 自治州, 自治區, 기타 地方行政體의 所有를 말한다.

國有財産의 處分 및 管理는 人民의 이름으로 당해 人民代議員會議 또는 人民代議員會議에 의하여 權限을 위임받은 國家機關이 정한다.

國有財産은 所有者 간의 合意에 의하여 公有할 수 있다.

②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 自治州, 自治區, 기타 地方行政體의 豫算 기타의 資金 및 그 管轄에 속하는 企業·施設의 資金으로 取得 또는 創出した 財産은 각각 당해 行政單位의 所有에 속한다.

③ 聯邦은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 自治州, 自治區, 기타 地方行政體의 債務에 대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하고,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 自治州, 自治區, 기타 地方行政體는 聯邦 및 당해 行政單位의 債務를 제외한 상호간의 債務에 대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20條 (土地 기타 天然資源의 所有) ① 土地, 地下資源, 水域 및 植物·動物은 당해 地域에 거주하는 人民의 不可讓이 權利이다.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 自治州, 自治區는 聯邦의 法律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行政單位 및 蘇聯의 利益을 위하여 당해 行政區域의 土地 기타 天然資源에 대한 占有權, 使用權, 處分權을 행사한다.

自治共和國, 自治州 및 自治區는 聯邦構成共和國의 法律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위의 權利를 행사한다.

2 以上の 聯邦構成共和國・自治共和國・自治州・自治區에 존재하는 水域 기타 天然資源의 使用權 및 處分權은 상호간의 合意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聯邦의 參與下에 행하여야 한다.

② 聯邦은 聯邦의 權力機關 및 行政機關, 聯邦軍, 國境警備隊, 國內治安隊, 鐵道警備隊, 輸送用파이프라인本管, 聯邦統一에너지시스템, 宇宙시스템, 聯邦通信・情報시스템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여되는 土地區域 기타 自然物 및 이 法 第21條 第2項을 근거로 聯邦과 관련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의 合意에 따라 聯邦이 所有하게 되는 財産을 이용하기 위하여 공여되는 土地區域 기타 自然物에 대한 占有權 및 處分權을 가진다.

上記의 土地區域 기타 自然物の 收用은 聯邦의 同意를 要한다. 새로운 土地區域 기타 自然物에 대한 聯邦의 占有 및 使用을 위한 供與는 聯邦과 관련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 自治州, 自治區 간의 合意에 따라 행한다.

③ 自治共和國, 自治州, 自治區가 聯邦構成共和國 전체의 需要를 충족하기 위하여 당해 行政單位가 소속되는 聯邦構成共和國에 土地區域 기타 自然物을 공여하는 節次는 聯邦構成共和國과 관련 自治共和國, 自治州, 自治區 간의 合意에 따라 정한다.

④ 天然資源의 利用 및 保全에 관한 全聯邦의 基本原則은 聯邦의 法令으로 정한다.

土地 기타 天然資源의 占有 및 利用을 위한 供與節次는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으로 정하며, 聯邦 및 聯邦構成共和國 간의 需要充足, 國防, 國家의 安全保障을 목적으로 한 土地 기타 天然資源의 占有 및 利用을 위한 供與節次는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의 天然資源의 利用 및 保全에 관한 法令에서 규정한다.

⑤ 土地 기타 天然資源의 供與 및 利用과 관련하여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 自治州 간에 발생한 紛爭은 第3者 裁定 기타 法律이 정하는 節次에 따라 審議한다.

第21條 (聯邦所有) 聯邦은 聯邦權力機關 및 行政機關의 財産, 輸送用파이프라인本管, 聯邦統一에너지시스템, 宇宙시스템, 聯邦通信・情報시스템, 聯邦國境警備隊・國內治安隊・鐵道警備隊의 財産, 國防施設, 防衛豫算資金, 聯邦國立銀行 기타 聯邦銀行, 聯邦豫備保險 기타 基金을 소유한다.

工業·에너지產業·建設業을 영위하는 企業 및 國民經濟集合體, 鐵道·航空·海洋運送, 聯邦 차원의 高等教育施設, 기타 聯邦의 資金으로 취득하였거나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 自治體, 地方行政體, 市民, 法人이 無償으로 聯邦에 인도한 財產도 聯邦의 所有에 속한다.

第22條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 自治州, 自治區의 所有) ① 聯邦構成共和國는 당해 共和國의 權力機關 및 行政機關의 財產, 市民의 文化·歷史的 財產, 豫算資金, 銀行, 豫備保險 기타 基金, 企業 및 市民經濟集合體, 共和國 차원의 高等教育施設 및 社會·文化施設 기타 당해 共和國의 主權·經濟的 自立性·經濟的 및 社會的 發展을 보장하는 財產을 소유한다.

② 自治共和國, 自治州, 自治區는 당해 權力機關 및 行政機關의 財產, 市民의 文化·歷史的 財產, 豫算資金, 人民代議員會議의 住宅 및 住宅公共事業, 農業·商業·日常서비스業·運送業·工業·建設業 등을 영위하는 企業 및 集合體, 國民教育·文化·保健施設, 기타 自治共和國·自治州·自治區 市民의 物質的 및 精神的 文化的 保全·經濟的 및 社會的 發展 기타 當面課題의 수행을 보장하는 財產을 소유한다.

第23條 (地方行政體의 所有) 州, 地區 기타 地方行政體는 당해 權力機關 및 行政機關의 財產, 豫算資金, 人民代議員會議의 住宅 및 住宅公共事業을 소유하며, 農業·商業·日常서비스業·運送業·工業·建設業 등을 영위하는 企業 및 集合體, 國民教育·文化·保健施設, 기타 經濟的 및 社會的 發展·地方行政體의 當面課題의 수행을 보장하는 財產도 소유할 수 있다.

第24條 (國有企業의 財產) ① 個別國有企業은 國家의 소유이며 당해 國有企業에 확보되어 있는 財產에 대하여 包括的 經濟的 運用權을 가진다.

企業은 自己의 財產에 대한 包括的 經濟的 運用權을 행사함에 있어 당해 財產을 占有·使用 및 處分하고, 自己의 裁量에 따라 이 財產에 대하여 法律에 反하지 아니하는 모든 行爲를 할 수 있다. 包括的 經濟的 運用權에 관하여는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의 法令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所有權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② 固有財產을 관리할 權限이 있는 國家機關은 企業의 設立, 企業活動의 目的設定, 企業의 再組織 및 清算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고, 聯邦, 聯邦構成共和國·自治共和國의 企業에 관한 法令에 따라 企業에 위탁된 國有財產의 實效的 利用 및 保全에

대한 監督 기타의 權限을 행사한다.

③ 國有財産을 管理할 權限이 있는 國家機關이 國有企業의 再組織 또는 清算을 決定한 경우, 當해 企業이 破産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當해 企業의 勞動集團은 企業의 리스 또는 集團所有에 기초하는 기타의 企業으로의 再組織을 要求할 權利를 가진다. 이 경우 國家機關과 勞動集團 間에 발생하는 紛爭은 國家 仲裁機關에서 처리한다.

第25條 (國有企業의 勞動集團構成員의 所有) ① 國有企業의 勞動集團은 當해 國有 企業이 租稅 기타 納付金을 國庫에 納付한 後 남은 利益에 대하여 處分權을 가진다. 이러한 利益分은 法令이 定하는 節次 및 金額에 따라 勞動集團構成員의 所有로 이전한다.

② 勞動集團의 構成員에게 귀속되는 利益額은 勞動集團構成員의 持分을 구성한다. 이 경우 勞動集團構成員에게 持分額에 相當하는 株式을 교부할 수 있다. 企業은 持分에 대하여 매년 配當을 지급해야 한다. 配當의 지급에 相當하는 利益分의 金額은 企業管理部和 勞動集團 間의 合意에 의하여 定한다.

③ 勞動集團構成員의 持分(그 全部 또는 一部)은 本人의 同意를 얻어 住宅 기타 社會的·文化的 施設의 建設 또는 取得에 相當할 수 있다. 이 경우 當해 持分에는 配當額을 加算하지 아니한다.

勞動集團의 構成員은 企業管理部和 勞動集團이 공동으로 決定한 節次 및 期限에 따라 自己의 持分額을 수령할 權利를 가진다.

企業이 清算하는 경우 持分額은 國庫·銀行 기타 債權者에 對한 辨濟 後 殘餘財産으로부터 勞動集團의 構成員 (또는 그 相續人)에게 支給한다.

第26條 (國家機關의 所有) ① 國家의 所有이며 所有者에 依하여 國家豫算에 입각하는 國家機關에 부여된 財産에 對하여는 當해 國家機關이 運用管理權을 가진다.

② 國家豫算에 입각하여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의 法令이 定하는 경우 經濟活動을 영위할 수 있는 國家機關은 이러한 活動으로부터 得한 所得 및 當해 所得으로 취득한 財産을 자주적으로 처분할 權限을 가진다.

③ 國家機關은 當해 機關이 처분할 수 있는 資金으로 債務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國家機關에 資金이 부족한 경우 그 債務에 對한 責任은 當해 財産의 所有者가 부담한다.

第5章 合作企業, 外國市民, 國際組織 및 外國國家의 所有

第27條 (合作企業의 所有) 蘇聯의 法人과 外國의 法人 및 市民이 참가하는 合作企業은 蘇聯의 領土內에서 株式會社 기타의 會社로 設立되어, 定款에서 定하는 目的事業의 수행에 필요한 財產을 소유할 수 있다.

第28條 (外國市民의 所有) 蘇聯市民의 所有에 관한 이 法의 規定은 蘇聯 內에 존재하는 外國市民의 所有에 대하여도 準用한다. 農民 기타 勞動的 經營의 所有에 관한 規定은 蘇聯 內에 계속 거주하는 外國市民에 대하여 準用한다.

第29條 (外國法人의 所有權) 外國法人은 蘇聯의 法令이 定하는 경우 및 節次에 따라 目的事業의 기타 活動을 수행하기 위하여 蘇聯의 領土內에 위치한 工場 기타의 企業, 建物, 施設 기타 財產을 所有할 수 있다.

第30條 (外國國家 및 國際組織의 所有) 外國國家 및 國際組織은 國際條約 및 聯邦, 聯邦構成共和國의 法令이 定하는 경우 및 節次에 따라 外交·領事 기타의 國際關係를 실현하기 위하여 蘇聯의 領土內에 위치한 財產을 소유할 수 있다.

第6章 所有權의 保障 및 保護

第31條 (所有權의 保障) ① 國家는 이 法에 따라 設立한 所有關係의 安定性을 보장한다.

②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이 所有權을 소멸시키는 法令을 채택하는 경우, 이러한 法令의 채택으로 인하여 所有者가 입는 損失은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聯邦, 關聯聯邦構成共和國 또는 自治共和國이 全액 補償한다.

③ 國家는 法令에 따라 市民, 組織, 기타의 所有者에게 所有權保護의 동등한 條件을 보장한다.

第32條 (所有權의 保護) ① 所有者는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의 法令에 따라 他人이 不法으로 占有하고 있는 自己財產의 返還을 청구할 權利를 가진다.

② 所有者는 占有의 侵奪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自己의 權利에 대한 모든 侵害의 除去를 청구할 수 있다.

③ 法院, 國家仲裁機關, 仲裁法院은 所有權을 보호한다.

④ 本條에서 정하는 權利는 所有者는 아니지만 包括的 經濟的 運用權, 運用管理權, 終身의 相續가능한 占有權, 기타 法律 또는 契約에서 정하는 根據에 기초하여 財產을 占有하는 者에게도 귀속한다.

第33條 (法律에서 정하는 根據에 기초하여 그 權利가 소멸하는 경우의 所有者의 利益保護) ① 所有者의 財產인 家屋, 기타 建物, 施設, 植栽物이 위치하는 土地區域의 收用に 관한 決定, 기타 직접적으로는 所有者의 財產의 收用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國家機關의 決定과 관련하여 所有權의 消滅하는 경우, 所有者는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의 法令에서 정하는 경우 및 節次에 의하여서만 所有權의 소멸로 인한 損失을 전액 補償받을 수 있다.

所有權의 소멸을 초래하는 國家機關의 決定은 所有者가 同意하지 아니하는 경우 法院, 國家仲裁機關 또는 仲裁法院에 의한 紛爭解決이 있기 전에는 이를 시행할 수 없다. 紛爭의 審理에서는 所有者의 損失補償에 관한 모든 문제도 해결한다.

② 國家에 의한 所有者 財產의 強制執行은 所有者의 債務에 대한 辨濟에 당해 財產을 충당하는 경우에만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의 法令에서 정하는 경우 및 節次에 따라 또는 接受 및 押收의 節次에 따라 인정된다. 自然災害, 事故, 傳染病 및 家畜傳染病의 流行, 기타 非常的 狀況인 경우에는 社會의 利益을 위하여 國家權力機關의 決定으로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의 法令에서 정하는 節次 및 條件에 따라 代價를 지급하고 所有者로부터 財產을 強制執行할 수 있다.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의 法令에서 정하는 경우 法院, 國家仲裁機關 기타 權限있는 國家機關의 決定에 의하여 犯罪 기타의 法律違反에 대한 處罰로서 所有者로부터 財產을 強制執行할 수 있다.

第34條 (所有權을 侵害하는 法令의 無效性) 國家行政機關 또는 地方國家權力機關이 法律에 적합하지 아니한 法令을 제정한 결과 所有者 기타의 者가 財產의 占有, 使用 또는 處분에 관한 權利를 侵害받은 경우, 이러한 法令은 所有者 또는 그 權利를 侵害받은 者의 訴에 의하여 無效로 인정된다.

위의 法令을 제정한 결과 市民, 組織, 기타의 者가 입은 損失은 당해 權力機關 또는 行政機關의 處分할 수 있는 資金으로 완전히 補償한다.

〈崔 星根 譯〉

〈参考資料〉

- ・ The Law on Property in the USSR, The Current Digest of the Soviet Press, Vol XLII, No. 12, 1990.
- ・ 聯邦における所有に関する聯邦法律, 日ソ經濟調査資料, 1990. 5.
- ・ ペレストロイカ所有法・解説, 法律時報, 1990. 8.

《研究基礎資料：翻譯》 90-06(通卷 第6卷)

蘇聯의 所有法

(非賣品)

1990년 12월 15일 인쇄

1990년 12월 20일 발행

편집 및 발행 한국법제연구원
인쇄 한국컴퓨터산업(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의 103
전화 : 722-0163~5
FAX : 722-2900

등록번호 1981. 8. 11 제1-190호

